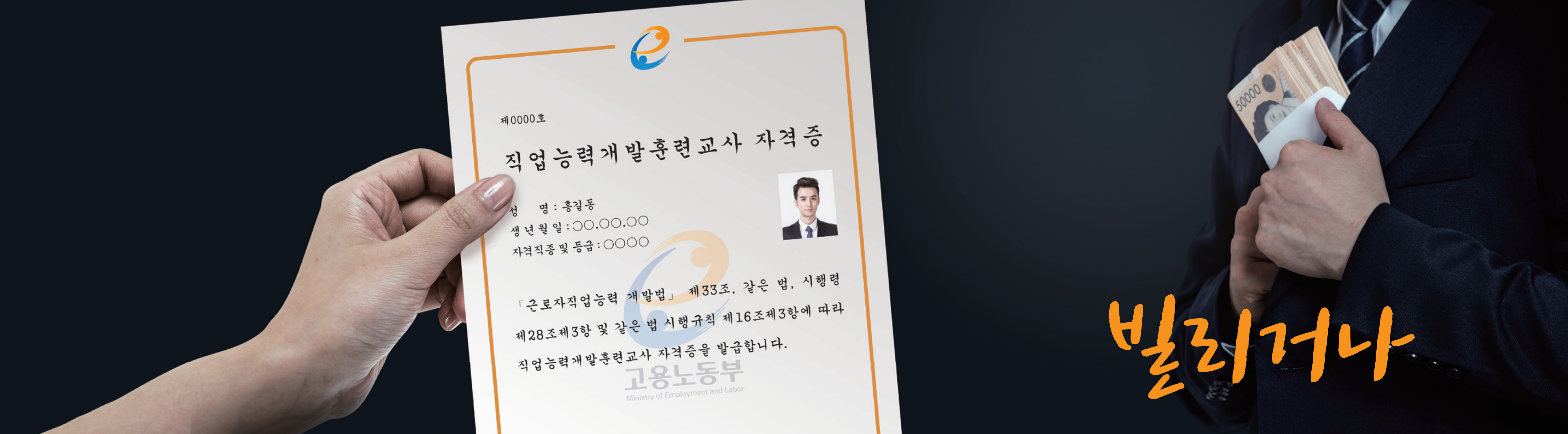




안됩니다.

2020년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
대여 및 알선 행위가 처벌됩니다.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.